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473
----------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9일

발의자: 이은미 의원

찬성자: 박춘희, 심현정,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 평창군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과반에 근접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경제적 불안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 마.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2025. 8. 26. ~ 2025. 9. 3.(9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복지정책과)	사유	의회 의견
제2조(정의) 1. “1인 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인”을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의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지원 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p>1인가구는 경제·주거·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필요성이 수시로 발생하고, 정책 수요가 빠르게 바뀜.</p> <p>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성 제시에 의의가 있으나, 유동적으로 바뀌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p> <p>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변화하는 1인가구 수요와 정책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p>	<p>[수용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과 지원(시행) 계획과는 차이가 있으며, 129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한 논문¹⁾에 따르면 1인가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건강가정 기본법」 등에 갈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것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될 수 있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명시하고 세부 시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조례 표준안을 참고함.

1) 장정문·정민자(2024),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 질 연구, 제42권 1호, p.78.

	제6조 ④ 「건강가정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제 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인가구 지원계획을 건강가정 시 행 계획에 포함시켜,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 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음. 중첩된 계획을 방지하고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이해도와 복지체감도를 높임.	[수용하지 아니함] · 위와동일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삭제	1년 단위의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내용 중복	[수용하지 아니함]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수정	[수용하지 아니함] · 또한 아래와 같이 수정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안·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안·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에서 “사무”로 정비하여 관련 조례와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인용하여 규정함.	[수용]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정책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 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연락처	(033) 330 - 2150